

파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파 주 시 장

1. 재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원장	정원(명)	현원(명)	재위탁기간 (5년)	비 고
시립꿈초롱	초롱꽃로 130	이경희	82	82	'26.11.1.~ '31.10.31.	운정6동
시립파밀리에	숲속노을로 150	김현아	60	59	'26.11.1.~ '31.10.31.	운정6동
시립행복사랑	별하람로 53	곽순자	67	60	'26.11.1.~ '31.10.31.	운정1동
시립파크푸르지오	해일로 33	정윤미	62	60	'27.1.1.~ '31.12.31.	운정5동

2. 재위탁심사 대상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자

가.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22조제2항

나.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

※ 70점 미만인 경우 재위탁 부적격으로 결정하고 변경위탁

3. 재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입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은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다.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라.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금지

마. 개인이 위탁운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사. 보육관련 법령, 교육부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안내 및 보육사업 추진 계획,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25조에 의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아.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조정 가능
- 자.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 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01. 27.)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4. 심사서류 접수

- 가. 공고기간: 2026. 9. 4.(금) ~ 9. 23.(수)
- 나. 접수기간: 2026. 9. 21.(월) ~ 9. 23.(수) (3일간)
- 다. 접수장소: 파주시청 보육아동과(파주시 시청로36, 제2별관 3층) ☎ 031-940-4413
-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반드시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 우편접수 및 대리인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마. 제출 서류

구 분	접수기간	제출서류
1차 서류접수	‘26. 9. 21.(월) ~ 9. 23.(수)	· 원본 1부, 사본 7부
2차 면접자료접수	‘26. 10. 12.(월) 18:00까지	· PPT발표자료(USB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목록 순서에 따라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붙임자료 참고]스프링편집 금지

5.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가. 심사자: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 나. 1차 서류심사 (35점)
- 일 시: 2026. 10. 6.(화) 14:00 (예정)
 - 내 용: 운영체 및 원장의 전문성^{20점}, 운영주체 공신력^{10점}, 재정능력^{5점}
- 다. 2차 면접심사 (65점)
- 일 시: 2026. 10. 15.(목) 14:00 (예정)
 - 내 용: 어린이집 운영실적^{30점}, 위탁체 원장(내정자)의 전문성^{10점}, 어린이집 운영계획^{25점}
 - 자기소개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5분 이내)(PPT 발표)
 -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운영의지에 대한 질의응답 등(10분 내외)
- ※ 불참 시 수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최종심사

- 위원별 심사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심사결과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
- 70점 미만인 경우 재위탁 부적격으로 결정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처리함

마. 결과발표

-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 : 2026. 10. 16.(금) (예정)

※ 심사 및 선정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위탁운영자 심사 및 결정은 무효로 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나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및 취소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실시

다. 모든 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함.

라.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예산서)는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취약보육(야간연장·장애아·영아·다문화아동 등) 중 2가지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여야 함

마.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별표 1> 제출서류의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간지 라벨처리)

사.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 미제출 시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아.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파주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 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자.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보육아동과 유권해석 판단에 따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 940 - 4413】